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48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 : 2021년 08월 11일

다. 회부일 : 2021년 08월 18일

라. 상정일 : 제30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심사보류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1. 6. 3. ~ 6.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021.6.9.)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순서 등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촉진법적 성격을 지닌 현행법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을 정리·재배열하고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전부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음(참고자료).

도로명주소의 개념

○ 도로명주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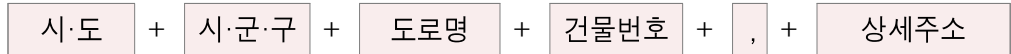
-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2014. 1.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

○ 도로명주소 체계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
 - 대로: 8차로 이상, 로: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 길: “로” 보다 좁은 길
- 건물번호는 도로를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차부여(20m간격)
 -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부여
-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 호수 등의 상세주소 부여
 - 상세주소: 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의 동·층·호
 - ※ 예) 서울시 중구 소월로 1, 103동 302호
 - 부여목적: 정확한 우편배달과 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부여대상 및 부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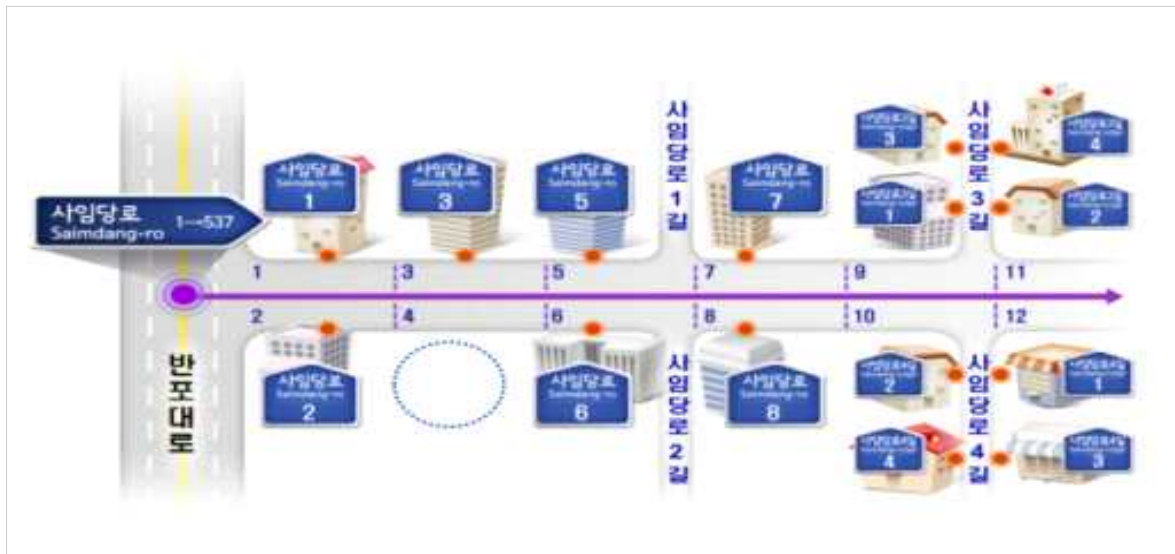
부여대상	부여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로 자동부여
단독·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건축물대장에 동호수 없음)	건물주나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예시



(단독 주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99		
(업무용 빌딩)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702호
(공동 주택)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125	,	108동 206호

○ 도로명주소 부여예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버스·택시 정류장과 같은 시설물에도 주소 정보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 및 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며, 도로명주소 홍보와 교육을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 하고 조문의 순서 등을 체계화하여 규정을 재정비 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실익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동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명변경 등 핵심적 부분을 개정할 경우 전부개정을 하도록 기준안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이 마련되어 있는 바, 조례 개정의 형식적 요건에도 보다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제명과 용어 변경(안 제2조~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2조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 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u>
<u>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u>	<u>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위치의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u>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을 손수건, 안내지도 등의 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선착장,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등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생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 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5. 그 밖에 <u>도로명주소</u>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u>도로명주소담당</u>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p> <p>2.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u>심의결과 보고 등</u></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 -----.</p> <p>2. ----- <u>주소정보</u>----- -----</p> <p>제10조(간사) ① ----- <u>간사 1인</u>-----, ----- <u>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장</u>이 된다</p> <p>〈삭 제〉</p>
--	--

- “도로명 주소”에서 “주소정보”로의 용어변경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지번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 현재는 버스·택시 정류장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주소정보란 도로명, 기호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를 의미함.
- 다만, “주소정보”는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를 포괄하는 개념인 바, 도로명 주소 용어에 친숙한 시민들로 하여금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법제처(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에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바,
 - 국민들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측면을 동 개정 조례가 충족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활성화 촉진 조문 정비(안 제2조~안 제4조)

-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위치의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p>	<p>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p>

여 법 제9조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을 손수건, 안내지도 등의 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문 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선착장,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등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 안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기존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지번주소는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점과 도로명주소가 길 찾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해외 주소표기 사례]

구분	주소표시방법				
미국 (텍사스)	건물번호 + 도로명	+	시명	+	주명 + 우편번호
	707 Texas avenue		College Station		Tx 77840
영국 (런던)	건물번호 + 도로명	+	시명	+	우편번호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프랑스 (파리)	건물번호 + 도로명	+	우편번호 + 시명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러시아 (모스크바)	우편번호 + 도로명	+	건물번호 + 출입구번호	+	호수
	117588 Litobssi Bulibar		D-6 Kor-1		Kb-62
독일 (베를린)	도로명	+	건물번호 + 우편번호	+	시명
	Sargomunde Str		38 10116		Berlin
스위스 (로잔)	건물번호 + 도로명	+	우편번호 + 시명		
	2 Rue dv simplon		1006 Lausanne		
중국 (북경)	시명 + 구명 + 도로명	+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6號		

○ 다만,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으나,

- 아직까지 지번주소 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이 존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로명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효과성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를 지원하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장소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며, 관내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제3조(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하여 개정함.

- 동 조문은 대중교통장소, 관내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및 확대·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과 동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와 관련 사업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중요 주소 정보(좌표 등)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악용하거나 국외 반출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 주소정보 반출에 대한 제한 규정 근거 및 벌칙 규정을 조례에 보완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는 현행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를 삭제하는 대신 관련 조문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여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등 주소 정보 사용확대를 위한 후속규정으로 보여짐.
- 동 조문은 분리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홍보 예산을 통해 도로명주소홍보와 교육에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홍보와 교육이 생색내기용·사문화 조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21	2020	2019	비고
계	291,293	312,202	370,426	
도로명주소홍보 및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	84,162	68,859	144,094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207,131	243,343	226,332	

- 또한, 역사적 장소나 인물 등을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서울시 명예도로명 제도가 운영중에 있는 바,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 대책마련에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명예도로명 현황]

(2021.7.31. 기준)

계	종로	중구	용산	중랑	도봉	은평	서문	마포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67	15	3	4	5	6	3	1	1	10	1	1	1	7	1	8

※ 총괄 : 15개구 / 67개소

3)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 직급변경 등(안 제5조~안 제12조)

-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현행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상위 법령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주소정보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회의 기능,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관리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현행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법률상 변경된 위원회명으로 보완하고, 위원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생략) <p>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p>	<p>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p>〈삭제〉</p>

에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1/2 이상이 되도록 하되,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과 관련 법령(「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회가 소방, 경찰, 교통 등 유기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행 위원회에 관련 실국장(행정국장·교통기획관·안전총괄관)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장을 변경하는 것이 위원장의 위상에 부합하는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당연직 (4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행정국장,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10명) : 외부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여성비율(4명, 40%)
 - 임 기 : 2020.10.1. ~ 202.9.30(2년)
 - 위원 선정기준 : 도로명주소사업관련 공무원 및 분야별전문가 등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u> (생략)</p>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u>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u> (현행과 같음)</p> <p>② ----- ----, 2회에 한하여 연임-----.</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 안 제8조제2항은 상위법령(「도로명주소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2018.1.4.>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다만, 동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의 장기 위촉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위원 위촉에 있어 주소정보위원회가 교통, 안전, 행정 등 참여하는 특수하고 복합적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을 현행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시장도 회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③ (생략)</p>	<p><u>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u> <u>-----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u> <u>원장이 필요하다고 -----.</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동 개정안은 회의 소집 주체를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에 시장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설치(2010.7.5) 이후 1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년('10년, '11년, '12년, '20년)만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개최 빈도가 많지 않고, 다루는 안건의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택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0년 이후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10년	'11년	'12년	'20년
개최 횟수	3회(146건)	3회(12건)	2회(2건)	1회(11건)
개최 유형	대면 2, 서면 1	대면 1, 서면 2	서면 2	서면1

-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장직무 대행을 현행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에서 연장자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연장자순으로 ----- -----

- 동 조항은 위원장 직무 대행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원장 대행 선임 방식은 자율적 사항에 속하고, 장단점이 존재하나,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는 방식보다 호선을 통해 위원장 대행을 선임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회의록 작성)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과 비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u>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u> ----- <u>포</u> <u>합한 회의록을 작성·관리</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시장이</u> ----- -----</p>

- 회의록은 회의참석 대상 및 진행상황은 물론 주요 참석자의 발언과 심의결과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 다만, 회의록 작성 및 비치와 관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의사가 미반영되고,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8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6. 3.~6. 23.)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도로명주소의 홍보)”를“(주소정보의 홍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를 “연장자순으로”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을 “간사 1인을”으로 하며, “도로명주소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간사는”을 “시장은”으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중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u> <u>조례</u></p> <p><u>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u> <u>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u> <u>“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u> <u>(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u> <u>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u> <u>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u> <u>것에 따른다.</u></p> <p><u>제3조(도로명의 사용의무) 서울특</u> <u>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u>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u> <u>(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u> <u>도로명을 사용 한다. 다만, 법에</u> <u>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u> <u>이 개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u> <u>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u> <u>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u> <u>을 사용할 수 있다.</u></p> <p><u>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u> <u>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u></p>	<p><u>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u> <u>조례</u></p> <p><u>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u> <u>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u> <u>다)은 각종 위치의 「도로명주소</u> <u>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u> <u>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u> <u>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u> <u>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u> <u>보를 사용한다.</u></p> <p><u><삭 제></u></p> <p><u>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u> <u>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u></p>

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을 손수건, 안내지도 등의 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문 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선착장,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등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

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생략)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 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명 주소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1/2 이상이 되도록 하되,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에 한하여 연임-----.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삭 제>

2. (생략)

3. 시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에 의해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

1.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삭제>

2. ----- 주소정보-----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
장자순으로 -----
-----.

제10조(간사) ① ----- 간사

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로 명주소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심의결과 보고 등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인-----, ----- 주소 정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 포 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

1. ~ 4. (현행과 같음)
5. ----- 시장이 -----

제12조(수당 등) -----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 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세출예산 없음

<'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 291,293천원>

- 도로명주소 교육, 홍보 실시
- 국가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위원회 명칭 변경, 조문체계 재정비로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최지이(2133-5847)